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7374 손해배상 청구

구 성

I. 담배소송 개요 및 현황

- 소송 배경 및 개요
- 1심 판결 요지와 문제점

II. 주요쟁점

-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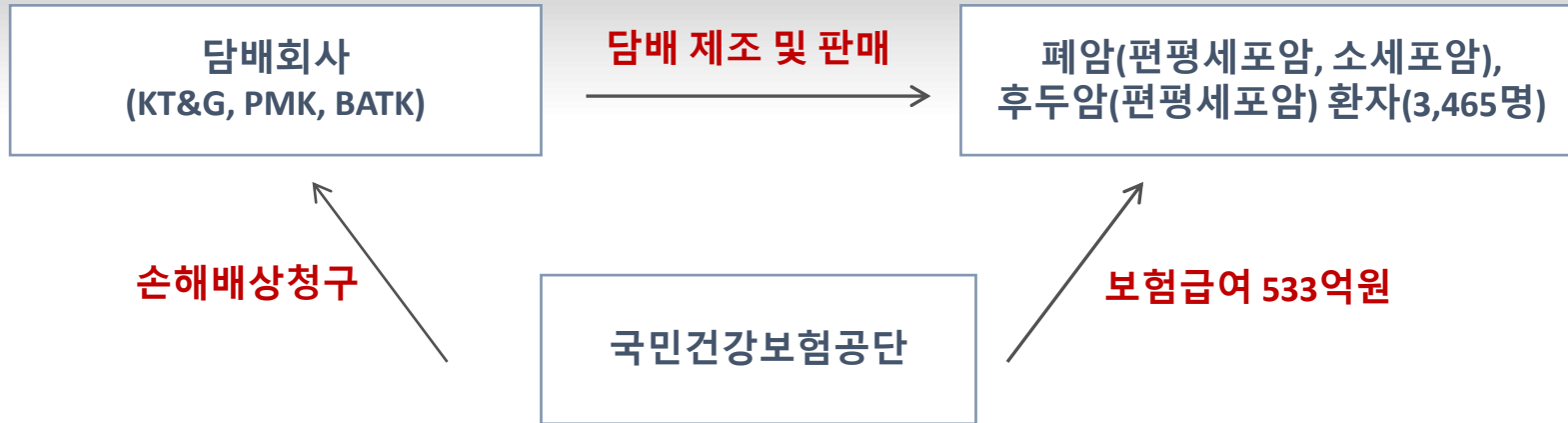
III. 질의응답

1

담배소송 개요 및 현황

담배소송 개요 및 현황

소송 개요(당사자, 청구원인, 소가)



제조물책임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안전상 결함

불법행위책임

궤련의 위험성 은폐, 왜곡
유해성 및 중독성 강화

담배소송 개요 및 현황

손해의 규모(소송대상자 선정 기준)

선행 개인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07나18883 판결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령의 남성으로서... 폐암 중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흡연과 폐암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내외 역학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명확한 관련성

-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the Carcinogenic Risk of Chemicals to Humans: Tobacco Smoke and Involuntary Smoking, volume 83(2004) 등
- 윤영호 외 7(2005) : 폐암 중 소세포암의 RR 21.7 편평세포암 11.7, 선암 2.1

담배소송 개요 및 현황

소송 경위와 배경

또 담배회사 손 들어준 법원...미국 등에선 '책임 인정'

JTBC뉴스 > 13,578

미국선 '담배회사 배상책임' 인정

JTBC

2014년 4월14일	건강보험공단, 국내외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3개사 상대로 537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8년 5월	재판 중단
2020년 9월11일	2014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2018년 5월 마지막 재판이 열린 지 2년4개월 만에 손해배상 소송 재개(14차 변론), 10월23일 15차변론 종결
2020년 11월20일	서울중앙지법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

19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등
국가·KT&G 상대 소송 제기

2007년

1심, KT&G 승소

2011년

2심, KT&G 승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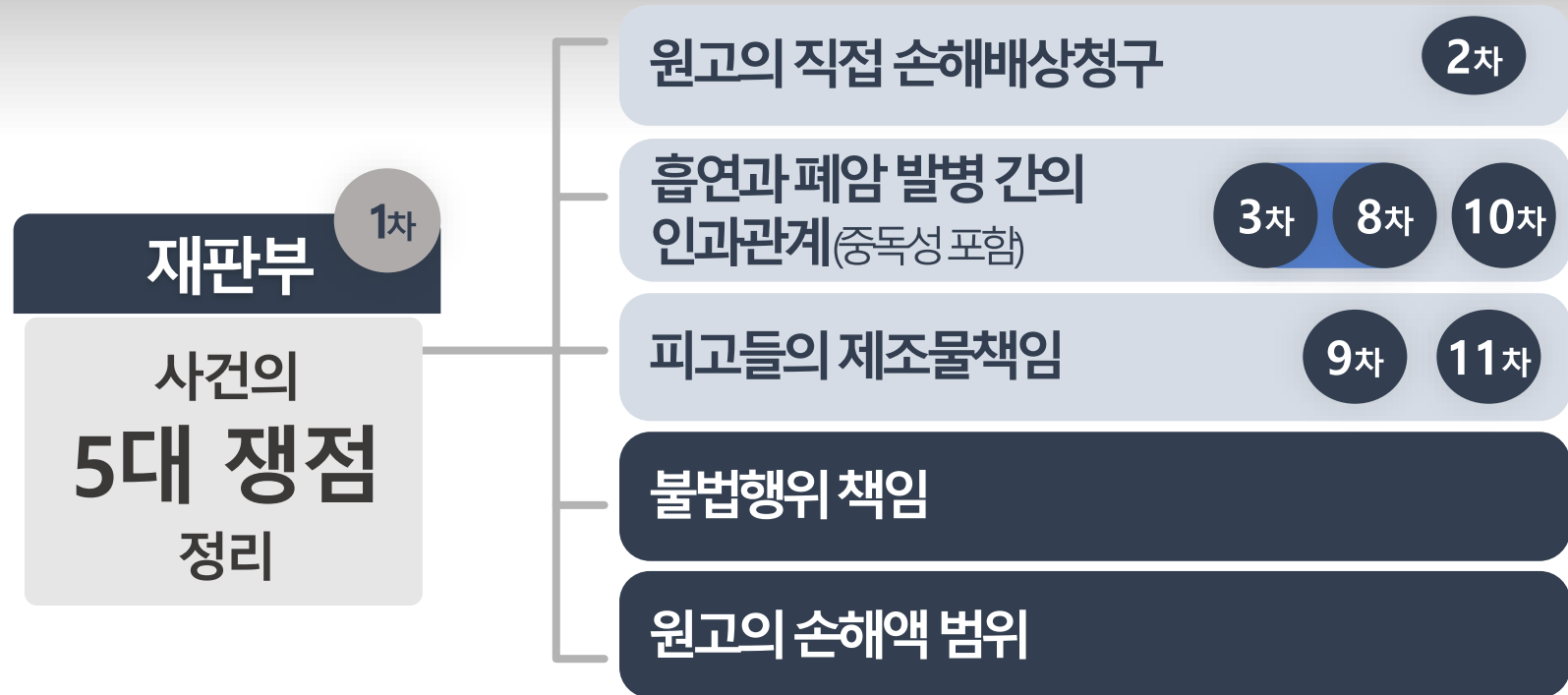
2014년

대법원, KT&G 승소 확정

“폐암은 복합적 요인으로 발병,
흡연 외에 다른 원인 없다는
증명 있어야”

담배소송 개요 및 현황

1심 변론 진행 경과



※ 재판부의 변경에 따른 기존 변론 내용 정리 (7, 12, 13차)

'18. 8. 피고들 요청에 의한 변론 기일 추정 후 '20. 8. 변론 재개

→ '20. 9. 11. (14차 변론), '20. 10. 23.(15차 변론) ⇒ **2020. 11. 20. 판결 선고**

담배소송 개요 및 현황

1심 판결 선고 ... “기존 대법원 판결 반복, 담배회사에 면죄부”

알쓸범잡2

담배 피해 소송

tvN

- 또 담배회사 손들어준 법원...미국 등에선 “책임 인정”(JTBC)
- 6년 끈 530억 담배와의 전쟁...“흡연.폐암 인과관계 부족” 결론(중앙일보)
- 6년 끈 담배소송...흡연과 암 인과 관계 이번에도 인정 못 받았다(한국일보)
- “흡연.질병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法, 담배회사 손들어줬다(세계일보)

6년간 이어진 담배 소송 1심의 끝은
건보공단의 패소였습니다

담배소송 개요 및 현황

1심 판결 요지

- 판결에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판단 근거

인정 사실	근거
① 이 사건 대상자 3,465명은 KT&G, PMK, BATK가 제조·수입·판매한 담배를 흡연한 자들로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들임	➤ 갑제 45호증 (대상자별 흡연력 및 진료비 내역 정리표) ➤ 갑제 80호증 (대상자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일체)
② 위 대상자들이 폐암(편평세포, 소세포), 후두암(편평세포)으로 진단받음	➤ 갑제 89호증 (대상자별 문진표) ➤ 갑제 143호증 (대상자별 의무기록지)
③ 공단이 위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비로 533억 원을 지출함	➤ 갑제 215호증 (확인서)

담배소송 개요 및 현황

1심 판결 요지

- 쟁점별 판단

5대 쟁점	재판부 판단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직접 피해자로서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보험자의 의무이행에 불과)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가능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설계상 · 표시상 결함 부존재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담배의 중독성 등 축소 · 은폐 불인정
공단의 손해액 범위	판단 불요

담배소송 개요 및 현황

1심 판결 요지(쟁점별 판단)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부

- 피해자의 재산상 불이익이 계약 또는 법질서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불법행위 손해 해당
→ 법이 예정하는 의무 이행, 법에 따른 자금 집행에 불과
- 건보법 58조 보험자 대위 규정 존재
→ 입법자의 의사는 보험자 등이 직접청구권 취득 못한다는 전제
- 직접 청구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항변 사유 공단에게 대항 불가하여 가해자에게 부당한 결과 초래
- 피고들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해당 질병 발생하였다는 점 증명 X

담배소송 개요 및 현황

1심 판결 요지(쟁점별 판단)

제조물 책임 성립 여부

설계상 결함
인정 X

- 니코틴 **제거**시 소비자가 의도하는 니코틴의 약리 효과 얻을 수 없음
- 담배 첨가제는 대부분 식품첨가제로 승인, 일반적으로 안전한 성분
- 천공 필터는 연기 속 니코틴 타르 줄이기 위한 설계 방식

표시상 결함
인정 X

- 흡연이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널리 인식
- 흡연 시작시 쉽게 끊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 널리 인식
- 법령에서 요구하는 표기의무 이행

통상적
안전성 결여
X

- 담배를 **기호품의 일종으로 보는 법률 체계나 사회통념 변경 X**
- 대부분의 유해 성분은 담뱃잎 연소 생성물
- **흡연 시작 뿐 아니라 흡연 계속 여부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

담배소송 개요 및 현황

1심 판결 요지(쟁점별 판단)

인과관계 인정여부

- 특이성 질환으로 인과관계 인정?

→ 해당 암종 역시 흡연 외 다른 요인으로 발병 가능성 존재

-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인과관계 인정?

→ 비흡연자 대비 흡연 노출 집단에서 이 사건 질병 걸린 비율 상당히 초과

but 대상자들에게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추가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담배소송 개요 및 현황

1심 판결의 문제점

-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쟁점을 제외하고, 선행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
- 흡연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 암종에 대하여, 선행 대법원 판결의 대상(선암)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 불인정
 - ※ 의료 전문가 및 전문학회의 의견서들이 전혀 검토·반영되지 않음
- 해외 소송 사례에서 담배의 결함 및 위법행위가 인정된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나 판단이 전무함

2

주요쟁점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중독성 포함)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유해물질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법원의 태도

✓ 대법원 2013.7.12.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 일반적 인과관계 Vs 구체적 인과관계

- 일반적 인과관계 : 당해 요인이 특정 유형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점
- 구체적 인과관계 : 그 요인이 원고의 질병을 실제로 일으켰다는 점

● 특이성 질환 Vs 비특이성 질환

- **특이성 질환** :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 +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
- **비특이성 질환** :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 다기 + 유전 등의 선천적 요인과 음주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1. 이 사건 특정 암종을 “특이성 질환” 또는 그에 준하여 볼 경우

대법원

특이성 질환은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

고엽제 소송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고엽제에 함유된 tcdd 노출로 발생하는 ‘염소성여드름’: 특이성 질환

다른 원인(카코딜산, 피클로람)으로도 ‘염소성여드름’ 발병 가능

특이성 질환: 특정 병인과 질병 간 특이성이 매우/극도로 높은 질환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1. 이 사건 특정 암종을 “**특이성 질환**” 또는 그에 준하여 볼 경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폐암 발병 상대위험도

소세포암

21.7배 위험

편평세포암

11.7배 위험

후두암

5.4배 위험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1. 이 사건 특정 암종을 “**특이성 질환**” 또는 그에 준하여 볼 경우

해당 암종 발생에 대한 흡연의 기여위험도

소세포암

95.4 %

편평세포암

91.5 %

후두암

81.5 %

국내 대표 전문가집단인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특이성 질환에 가깝다 의견 표명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1. 이 사건 특정 암종을 “특이성 질환” 또는 그에 준하여 볼 경우

사건	질병	역학적 인과관계
고엽제 사건 (대법 2006다17539)	폐암 등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해당 질환의 발병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 수 없다.
서울시 대기오염 사건 (대법 2011다7437)	호흡기 질환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에 의한 호흡기질환 발병의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CO 1.041, NO ₂ 1.024, 미세먼지 1.011
선행 개인소송 (대법 2011다22092)	선암에 한정	선암은 편평세포암, 소세포암과 비교해 흡연과의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
이 사건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	각각 21.7배, 11.7배, 5.4배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판시(1심 판결)

20갑년 이상 고도 흡연 → 폐암과의 인과관계 추정 가능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2. 이 사건 특정 암종을 "비 특이성 질환" 으로 볼 경우

✓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등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 인정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역학적 인과관계**)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 노출 정도, 발병시기 등에 대한 증명(**개별적 사정**)

인과
관계
인정

☞ 위험인자에 의해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2. 이 사건 특정 암종을 “비 특이성 질환”으로 볼 경우

사건 대상자들의 개별적 사정

흡연 노출 정도	대부분 10/20대 흡연시작 : 20~150갑년 검진자료/확인서/의무기록지 (갑 제325호증)
발병 시기	장기간 흡연에 노출된 이후에 해당 질환이 발병 요양급여내역자료 / 의무기록지
노출 전 건강상태	10/20대 건강상태 양호, 특이점 없음
질병 상태의 변화	특이사항 없음 의무기록지를 통해 암 진단까지의 검사 과정 확인
기타 위험요인	• 후두암 상대위험도 : 흡연 4.65 / 음주 1.09 • 흡연과 음주는 서로 상승(상조)작용을 일으킴 서로 상조작용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89다카1275)
생활습관, 가족력	흡연을 배제할 정도의 위험요인 확인하기 어려움

담배의 중독성

사건 전반의 핵심 쟁점

흡연 계속의 “주된” 원인?

본질적/강화된
중독성

vs.

자유의지
에 의한 선택

담배의 중독성

과학적 사실로 확정 (정부보고서와 세계보건기구 등)

- ☑ 1 중독(의존)은,
뇌 회로의 기저변화로 인해 행동의 자율성을 상실한 채
지속적이고 강박적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증상

중독 = 뇌 질환

- ☑ 2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금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흡연은 의지가 아닌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독질환'

흡연 = 중독질환

20갑년 이상의 흡연력 → 니코틴 중독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인과관계 측면에서의 중독성

피고 : 본 소송에서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 강조 **반론**

- ☑ 실제 미국 내 모든 담배회사들은 1994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까지도 '담배 중독성'을 일체 부인

1994.4
미국 하원 보건환경분과위원회
청문회(Waxman청문회) 중

갑제257호증



미국 워싱턴 하원 의회 (1994. 4.)

KBS1

인과관계 측면에서의 중독성

피고 : 본 소송에서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 강조 **반론**

- ✓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을 통해
니코틴이 실제로 두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밝힘 (중독성 실재)

When you smoke, the nicotine actually changes the brain – that's why quitting is so hard.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은 실제로 두뇌를 변화시킨다 - 이것이 금연이 매우 어려운 이유이다.

Philip Morris USA, R.J. and Lorillard.
법원의 명령에 따라, R.J. 레이놀즈(R.J. Reynolds Tobacco), 필립모리스 USA(Philip Morris USA), 알트리아(Altria) 및 로릴라드(Lorillard)에 의해 자발됨.

2017.11~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실을 알리는 담배회사들의 광고

갑제281호증

1.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은 실제로
두뇌를 변화시킨다-이것이 금연이 매우
어려운 이유이다
2. 필립모리스 등은 궤련의 중독성이
강화되도록 의도적으로 궤련을 설계하였다.
담배회사는 필터 설계, 니코틴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암모니아 첨가 및 담배잎
배합의 물리적 및 화학적 구성 조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니코틴의 영향과
전달을 제어한다.

피고 : 본 소송에서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 강조 **반론**

미국 담배와 국내 담배는 다르다?

중독성의 부인?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궐련 설계의 기본 원리와 기능

Ken Podraza Ph.D., 필립모리스 USA

갑 제163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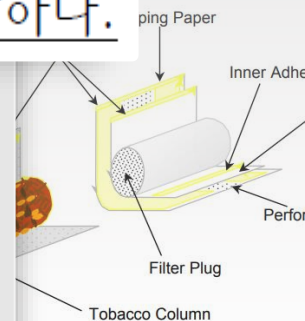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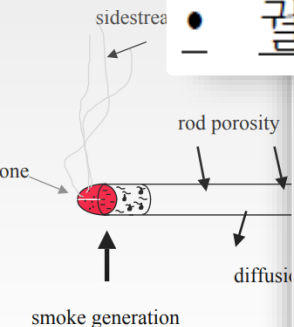
Basic Principles of Cigarette Design and Function

- A cigarette is surprisingly complex with many inter-related parts

Director

- 궐련은 수많은 상호 의존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다.

Philip Morris USA



이 사건 소송에서의 담배는 고도의 엔지니어링 기술로 만들어진 '제조물'

소비자가 기대하는 '제조업자의 의무'

제조물 책임법

- ☑ 제품에 위해성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위험성을 제거할 때까지 **제조 · 판매 X**
- ☑ 즉각적인 중단이 어렵다면,
위험성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부족함이 없도록 알려
소비자가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인식을 방해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 X)
- ☑ 위험성을 제거하는 의무
위험성 감소 기술을 우선 사용
위험성 증가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사용 X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위해한 담배에 대해

합리적인 대체설계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설계를 채용하지 않는 것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설계로서, 니코틴 저감 담배

합리적 대체 설계 1 | 위험 증가 요인의 제거

현대 궤련이 갖는 고도의 **중독성**은 궤련에 사용된 담배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궤련은 중독을 위해 설계된다.

담배 제품의 설계와 구성성분이 제품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유인적이고 더 중독성 있게 만든다.

궤련제품의 중독성과 궤련 설계와의 관계

미국, William A. Farone, Ph.D.

갑 제260호증

modern cigarette is not an accident attributable to the contains nicotine. The modern cigarette has undergone, formulated, manufactured and marketed in brand names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trial by nonusers, of continued use following trial by users, and of dependence. While Dr. William Dunn of Philip Morris summed up a cigarette by saying that "smoke is beyond question the most optimized vehicle for nicotine and the cigarette is the most optimized dispenser of smoke" he left out the extent to which cigarette companies have gone to enhance the function and utility of the cigarette in creating and maintaining dependence.

Of course, the cigarettes of a century or more ago were addictive and it is difficult to assess how their addictiveness compares with the cigarettes of the last 50 years. We do know that they delivered a very harsh smoke and were considerably less attractive and palatable than their more modern counterparts. **We also know that as health concerns**

보건총감 보고서 2010

미국,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갑 제265호증

담배 관련 발행된 30번째 보건 총감 보고서이다. 담배 관련 경로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과학적 증거는 다음과

궤련은 중독을 위해 설계된다.

- 담배 제품의 설계와 구성 성분은 그 제품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유인적이고 더 중독성 있게 만든다. 오늘날 궤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매력적이고 중독적으로 만든다. 오늘날 궤련은 폐에서 심장과 뇌로 니코틴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한다.

궤련의 설계와 구성성분 → 궤련 제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독자적인 요인

암모니아 등으로 연기의 pH 조절 → 니코틴의 뇌 전달 속도 및 효과 강화

B.A.T. 제품 세미나 中
1984.7 | B.A.T. U.K. & Export

갑 제186호증

B.A.T. (U.K. & E.) PRODUCT SEMINAR

Lythe Hill Hotel,
Haslemere

salt form. When a cigarette is smoked, nicotine is released momentarily in the free-form. In this form, nicotine is more readily absorbed through the body tissue. Hence it is the free nicotine which is associated with IMPACT, i.e. the higher the free nicotine, the higher the IMPACT.

“궐련을 흡연할 때 니코틴은 그 순간 유리-형태(free-form)가 된다. 이 형태에서 니코틴은 더 쉽게 인체 조직을 통해 흡수된다. 따라서 “강한효과(IMPACT)”와 관련이 있는 것은 프리 니코틴이다. 즉, 프리니코틴이 많을수록, 강한효과도 커짐”

암모니아 등으로 연기의 pH 조절 → 니코틴의 뇌 전달 속도 및 효과 강화

갑 제198호증

...e. In the human situation, the nicotine in the vapour phase reaches the back of the throat and is very much involved in the sensation of "impact". The amount of nicotine in the vapour phase can be modified by changing the acidity (pH) of the smoke. Hence it is readily feasible to have two cigarettes which deliver the same amount of nicotine (as measured on a Cambridge pad) but which are easily differentiated on the sensory bias of impact since the acidity of the smoke (and hence amount of nicotine in the vapour phase) is different.

인체 내에서 증기상태의 니코틴이 목 뒤쪽까지 도달하고 '강한효과' 감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체상태에서 **니코틴의 양은 연기의 pH를 변경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갑 제187호증

SUMMARY OF PROGRESS

Increasing the pH of a medium in which nicotine is delivered increase the physiological effect of the nicotine by increasing the ratio of free base to acid salt form, the free base form being more readily transported across physiological membranes. We are pursuing this project with the eventual goal of lowering the total nicotine present in smoke while increasing the physiological effect of the nicotine which is present, so that no physiological effect is lost on nicotine reduction.

"니코틴 전달 매체의 pH를 높이면... 유리 염기(프리 베이스) 형태의 니코틴 비율을 증가시켜 그 생리적 효과가 증대된다.... (생략)

암모니아 등으로 연기의 pH 조절 → 니코틴의 뇌 전달 속도 및 효과 강화

Cigarette companies control the impact and delivery of nicotine in many ways, including designing filters and selecting cigarette paper to maximize the ingestion of nicotine, adding ammonia to make the cigarette taste less harsh, and controlling the physical and chemical make-up of the tobacco blend.

궐련 회사들은 니코틴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터의 설계 및 궐련 용지의 선정, 궐련의 거칠고 쓴 맛을 줄이기 위한 암모니아 첨가, 담배잎 혼합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구성 조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니코틴의 영향과 전달을 제어한다.

2017.11~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실을 알리는 담배회사들의 광고

갑제281호증

1.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은 실제로 두뇌를 변화시킨다-이것이 금연이 매우 어려운 이유이다
2. 필립모리스 등은 궐련의 **중독성이 강화되도록 의도적으로 궐련을 설계**하였다. 담배회사는 필터 설계, 니코틴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암모니아 첨가 및 담배잎 배합의 물리적 및 화학적 구성 조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니코틴의 영향과 전달을 제어한다.

당류를 통한 위해성 증가

당류-니코틴 연구

1992, ATP-R&D

Date: July 29, 1992

Department: ATP-R&D

갑 제267호증

Report #: ATP 92-210

No. of Pages: 22

Program #: 502

Notebook

Pages: None

Dated: N/A

Previous Reports: None

SUGAR/NICOTINE STUDY

OBJECTIVE: To determine the type and amount of casing sugar needed on burley tobacco for different nicotine levels and identify a sugar to nicotine ratio that can be used to develop smoother products.

SUMMARY: Low-mid stalk (K1) and mid-upper stalk (K2) burley tobaccos were cased with 0, 4, 8, 12 and 16% fructose, glucose and sucrose, respectively. Tobacco and smoke analyses as well as taste evaluations were obtained.

Results from the smoke data showed that the type of sugar used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smoke level. Infor and K2 at 8% Total type

첨가제의 당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연기 속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가 증가...

From the data gathered, an optimum sugar to nicotine ratio was determined to be 3.3/1.0. (K1 = 8% sugar ÷ 2.4 nicotine; K2 = 12% sugar ÷ 3.6 nicotine)

Denoble VJ. 구두 증언

1997. 매사추세츠 주 보건부 청문회

갑 제202호증

COMMITTEE ON THE HEALTH OF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HEARING: To receive written and oral testimony on proposed regulations entitled "Cigarette and Smokeless Tobacco Products: Reports of Added Constituents and Nicotine Ratings" (105 CMR 660.000), and to consider such additional matters as set forth in the Notice of Public Hearing; held at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250 Washington Street, Boston, Massachusetts, on Thursday, January 30, 1997, at 9:10 a.m.

BEFORE: Deborah Klein Walker, Ed.D., Chairperson
Gregory N. Connolly, DMD, MPH
Paul Jacobsen

담배회사들은 중독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당류 사용을 증가·유지시켜 왔음

합리적 대체 설계 1 | 위험 증가 요인의 제거

당류를 통한 위해성 증가



Hard pack - 20 cigarettes

	AMOUNT %	MG/CIG
BURNT ITEMS		
TOBACCO (담배잎)	51.5	482.3
WATER (물)	7.2	67
CIGARETTE PAPERS (궤련지)	4	37.6
SUGARS (SUCROSE AND/OR INVERT SUGAR) (당류(수크로오스, 전화당, 고과당 콘시럽))	3	28.1

담배(말보로)
1 갑당
구성

을나 56호증

퀄런에 첨가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갑 제239호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기영

약력

본인은 서울대학교 학사와 보건학 석사, 미국 미시건대학 (University of Michigan) 석사, 하버드대학교 (Harvard University)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1997년에 호주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보건대학 전임강사로 임명되었고 1999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었고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Kentucky 보건대학원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2007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로 임명되었고 부교수를 거쳐 현재 같은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본인의 전공은 환경보건이다. 본인이 현재까지 발표한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115편, 국내학술지에 55편으로 본 전문가 의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논문은 첨부 1과 같다.

배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퀄런에 첨가된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받았다.

퀄런 첨가제의 정의

퀄런첨가제는 퀄런의 성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담배회사가 첨가제를 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퀄런 첨가제의 문제점

1. 중독성 증가

담배 안에 들어있는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의 흡수를 증가시켜서 중독이 더 잘 되게 만든다.

2. 유인성 증가

니코틴 고유의 자극적이고 썩은 냄새를 줄이고 향을 추가하여 담배 연기를 흡입하기 쉽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3. 독성과 유해성 증가

퀄런첨가제 중 자체적으로 독성을 보이는 물질도 있으며 담배의 경우 고온에서 태우기 때문에 타면서 발생하는 연소산물이 안전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고 고온에서 태워졌을 때 여러 가지 첨가제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유해 물질을 발생하는지도 알 수 없다.

유해성, 중독성, 유인성이 증폭되는 첨가제를 추가하는 설계를 지속적으로 사용

설계상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Caution
As of: January 12, 2018 1:53 AM Z

Philip Morris USA, Inc. v. Arnitz

Court of Appeal of Florida, Second District
July 21, 2006, Opinion Filed
Case No. 2005-625

Reporter

933 So. 2d 693 **, 2006 Fla. App. LEXIS 12074 **, OCH Prod. Liab. Rep. P17,497; 31 Fla. L. Weekly D 1949

PHILIP MORRIS USA, Inc., a foreign corporation,
Appellant, v. RONALD J. ARNITZ, Appellee.

Subsequent History: [**1] Released for Publication
August 8, 2006.

Review denied by: Costs and fees proceeding at [Philip Morris USA, Inc. v. Arnitz, 2006 Fla. LEXIS 3016 \(Fla. Dec. 20, 2005\)](#).

Prior History: Appeal from the Circuit Court for
Hillsborough County; Sam D. Pendino, Judge.

Disposition: Affirmed.

Core Terms

comparative fault, cigarettes, smoking, comparative
negligence, design defect, trial court, affirmative
defense, tobacco, strict liability, presenting evidence,
jury instructions, additives, nicotine, fault, amended
complaint, defects, pleaded risks.

suit against the manufacturer, alleging negligence, strict
liability, and "conspiracy to commit actual fraud." Other
defendants named in the action were subsequently
dropped by the smoker, as well as all claims except
strict liability. At trial, the smoker identified three alleged
design defects in the cigarettes, which he acknowledged
that he was partially at fault for. The trial court
determined that the smoker could present evidence of
comparative fault because he had pleaded the issue,
even though the manufacturer had withdrawn that
defense, and the jury was instructed on that issue. After
a jury award was reduced by the smoker's comparative
negligence, the manufacturer appealed. The court found
that the smoker had the right to choose the theory under
which his case was tried. Accordingly, the trial court
properly allowed evidence and instructed the jury on the
issue of comparative negligence. Federal law did not
preempt the design defect claims.

Outcome

The court affirmed the judgment of the trial court.

Philip Morris USA, INC v. ARNITZ 판결문

2006. 7. 21 / 미국 플로리다

- 첨가제를 통해 **인체 저항력 무력화** → 깊은 흡입 유발
- 일부 첨가제가 니코틴의 형태를 **유리화(free base)**하여 중독성 강화
- 연초 열풍처리(flue-cured) 방식 채택 → **발암물질* 10배 증가**

* 담배특이 니트로사민

합리적 대체 설계 2 | 니코틴 함량을 낮춘 담배

중독성이
강화되도록
의도적으로 제품을 설계

가능

중독성이
감소되도록
의도적으로 제품을 설계

불가능?

중독을 유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수준의 니코틴 함량 조절이 가능

알칼로이드 저감 담배(ART) 프로그램 필립모리스USA

ATTORNEY CLIENT PRIVILEGE
Philip Morris USA RESTRICTED

갑 제279호증

and Tobacco (ART) Program

I. PRODUCT CONCEPT AND PROJECT OVERVIEW

A. Historical Perspective

A. 역사적 관점

니코틴 제거 또는 니코틴 저감 담배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50년대 초반부터 필립 모리스와 다른 회사들은 담배의 니코틴 수준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고 있었다.

presented at this meeting by GF's staff included a discussion of supercritical CO₂ extraction of caffeine from coffee, among other things. General Foods had extensive experience extracting alkaloids (caffeine) from coffee. They found

¹King Sano produced by Steffano Brothers in Philadelphia, Reynolds #1 Box, marketed in Germany/Switzerland, and Reemstma R6 marketed in Germany were all low nicotine cigarettes.
²K. Houghton, J. Charles, C. Lilly, B. Kuhn, D. Knudson, L. Meyer, M. Hauserman, and F. Resnick.

2063096

퀄련의 중독성 저감

1998, 미국 의학 협회 ASSOCIATION

갑 제167호증

the addictiveness of cigarettes

Jack E Henningfield, Neal L Benowitz, John Slade, Thomas P Houston, Ro and Scott D Deitchman, for the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 American Me

과학위원회(Council on Scientific Affairs)는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 (a) **퀄련에서 니코틴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 (b) 니코틴 감소 전략은 청소년 담배 중독을 예방하고, 수 백 만 명의 흡연자들의 현재 금연 노력을 도울 것으로 충분히 전망된다.

nicotine delivery health, as part treatment; and would need to be a search and incre consumers and hea tobacco and health s—The council g: (a) that cessa be the goal f that the Ame continue to ver tobacco pro n of nicotine : oducts as dru at research be odifications tha ag cigarettes; (d the addictiven d within 5-1

evaluated to project the impact of a nicotine reduction strategy on initiation and maintenance of, and relapse to, tobacco use. A range of potential concerns and barriers was addressed, including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reducing cigarette nicotine content to non-addictive levels, the possibility that compensatory smoking

expanded surveillance to i in the use of tobacco prod nicotine-containing prod panded access to smoking ment, and strengthening o infrastructure; and (g) i labelling of tobacco produ more meaningful, and i



실제 위해성 감소 설계 사례 (80년대) : 아메리칸 타바코사의 칼톤, 레이놀즈사의 나우시가렛, 필립모리스의 캠브리지 등

중독을 유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수준의 니코틴 함량 조절이 가능

갑 제166호증

중독에 대한 니코틴 문턱값 설정하기

ESTABLISHING A NICOTINE THRESHOLD FOR ADDICTION

The Implications for Tobacco Regulation

On February 25, 1994,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leased a letter to the Coalition on Smoking or Health announcing its intention to consider regulating cigarettes. The agency's premises were that the vast majority of tobacco users self-administer the product for the drug effects of nicotine and to sustain addiction and that cigarette manufacturers control the levels of nicotine in cigarettes to maintain this addiction. The FDA further raised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cigarettes on the basis of their nicotine content to prevent addiction.

On February 28, 1994, the ABC news program *Day One* presented evidence that tobacco manufacturers manipulate the nicotine content of cigarettes. One way they do this is by removing nicotine from tobacco and then adding it back in controlled amounts, using tobacco extracts containing nicotine. It was suggested on the news program that the amount of nicotine in tobacco was controlled to ensure that the level was adequate to maintain nicotine addiction. In support of this idea the program quoted an internal memorandum from a Philip Morris Tobacco Company scientist

갑 제170호증

니코틴 함량을 줄인 퀄런

Addiction RESEARCH REPORT

doi:10.1111/j.1360-0443.2009.02780.x

Reduced nicotine content cigarettes: effects on toxicant exposure, dependence and cessation

Dorothy K. Hatsukami^{1,2}, Michael Kotlyar^{1,3}, Louise A. Hertsgaard¹, Yan Zhang^{1,2}, Steven G. Carmella^{1,2}, Joni A. Jensen¹, Sharon S. Allen¹, Peter G. Shields¹, Sharon E. Murphy^{1,2}, Irina Stepanov^{1,2} & Stephen S. Hecht^{1,2}

University of Minnesota Transdisciplinary Tobacco Use Research Center, Minneapolis, MN, USA¹; University of Minnesota Masonic Comprehensive Cancer Center, Minneapolis, MN, USA²; Department of Experimental and Clinical Pharmacology, College of Pharmacy,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MN, USA³ and Georgetown University Lombardi Comprehensive Cancer Center, Minneapolis, MN, USA⁴

ABSTRACT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reduced nicotine cigarettes on smoking behavior, toxicant exposure, dependence and abstinence. **Design** Randomized, parallel arm, semi-blinded study. **Setting** University of Minnesota Tobacco Use Research Center. **Interventions** Six weeks of: (i) 0.05 mg nicotine yield cigarettes; (ii) 0.3 mg nicotine yield cigarettes; or (iii) 4 mg nicotine lozenge; 6 weeks of follow-up. **Measurements** Compensatory smoking behavior, biomarkers of exposure, tobacco dependence, tobacco withdrawal and abstinence rate. **Findings** Unlike the 0.3 mg cigarettes, 0.05 mg cigarettes were not associated with compensatory smoking behaviors. Furthermore, the 0.05 mg cigarettes and nicotine lozenge were associated with reduced carcinogen exposure, nicotine dependence and product withdrawal scores. The 0.05 mg cigarette was associated with greater relief of withdrawal from usual brand cigarettes than the nicotine lozenge. The 0.05 mg cigarette led to a significantly higher rate of cessation than the 0.3 mg cigarette and a similar rate as nicotine lozenge. **Conclusion** The 0.05 mg nicotine yield cigarettes may be a tobacco product that can facilitate cessation; however, future research is clearly needed to support these preliminary findings.

Keywords Biomarkers of exposure, compensatory smoking, nicotine dependence, reduced nicotine cigarettes, tobacco cessation, tobacco withdrawal.

Correspondence to: Dorothy K. Hatsukami, 717 Delaware St. SE, Minneapolis, MN 55414, USA. E-mail: hatsu001@umn.edu
Submitted 29 September 2008; initial review completed 6 January 2009; final version accepted 11 August 2009

갑 제278호증

니코틴 함량 기준이 감소된 퀄런에 대한 무작위 연구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SPECIAL ARTICLE

Randomized Trial of Reduced-Nicotine Standards for Cigarettes

Eric C. Donny, Ph.D., Rachel L. Denlinger, B.S., Jennifer W. Tidey, Ph.D., Joseph S. Koopmeiners, Ph.D., Neal L. Benowitz, M.D., Ryan G. Vandrey, Ph.D., Mustafa al'Absi, Ph.D., Steven G. Carmella, B.A., Paul M. Cinciripini, Ph.D., Sarah S. Dermody, M.S., David J. Drobes, Ph.D., Stephen S. Hecht, Ph.D., Joni Jensen, M.P.H., Tonya Lane, M.Ed., Chap T. Le, Ph.D., F. Joseph McClernon, Ph.D., Ivan D. Montoya, M.D., M.P.H., Sharon E. Murphy, Ph.D., Jason D. Robinson, Ph.D., Maxine L. Stitzer, Ph.D., Andrew A. Strasser, Ph.D., Hilary Tindle, M.D., M.P.H., and Dorothy K. Hatsukami, Ph.D.

ABSTRACT

BACKGROUND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an set standards that reduce the nicotine content of cigarettes.

METHODS

We conducted a double-blind, parallel, randomized clinical trial between June 2013 and July 2014 at 10 sites. Eligibility criteria included an age of 18 years or older, smoking of five or more cigarettes per day, and no current interest in quitting smoking.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smoke for 6 weeks either their usual brand of cigarettes or one of six types of investigational cigarettes, provided free. The investigational cigarettes had nicotine content ranging from 15.8 mg per gram of tobacco (typical of commercial brands) to 0.4 mg per gram. The primary outcome was the number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during week 6.

중독을 유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수준의 니코틴 함량 조절이 가능



11 of 98 DOCUMENTS

WILLIE EVANS, executor,¹ vs. LORILLARD TOBACCO COMPANY.

1 Of the estate of Marie R. Evans.

SJC-11179

SUPREME JUDICIAL COURT OF MASSACHUSETTS

465 Mass. 411; 990 N.E.2d 997; 2012 Mass. LEXIS 460; CCH Prod. Liab. Rep. P19,144

December 3, 2012, Argued
June 11, 2013, Decided

PRIOR HISTORY: [***]

Suffolk. Civil action commenced in the Superior Court Department on June 28, 2004. The case was tried before Elizabeth M. Foley, J., and motions for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for a new trial, for remittitur, and to alter or amend findings of fact and judgment were heard by her. The Supreme Judicial Court granted an application for direct appellate review.

Evans v. Lorillard Tobacco Co., 2011 Mass. Super. LEXIS 302 (Mass. Super. Ct., 2011)
Evans v. Lorillard Tobacco Co., 2011 Mass. Super. LEXIS 149 (Mass. Super. Ct., 2011)

HEADNOTES

Tobacco. Wrongful Death. Negligence. Wrongful death. Duty to warn. Defective product. Adequacy of warning. Comparative. Gross negligence. Consortium. Parent and Child. Consortium. Willful. Wanton, or Reckless Conduct. Conscious Pain and Suffering. Consumer Protection Act. Unfair or deceptive act. Uniform Commercial Code. Warranty. Warranty. Damages. Wrongful death. Loss of consortium. Punitive. Conscious pain and suffering. Jury and Jurors. Practice. Civil. Wrongful death. Challenge of jurors. Bias of judge. Mistrial. Dismissal. Instructions to jury. Collateral Estoppel. Estoppel. Res Judicata. Limitations. Statute of

Evidence. Findings in another proceeding. Relevancy and materiality.

COUNSEL: Paul F. Ware, Jr. (Kevin P. Martin & Andrew J. McIlwain, Jr., with him) for the defendant.

Michael D. Wetman (Thomas Fritsard with him) for the plaintiff.

The following unsubmitted briefs for amici curiae: Robin S. Conrad, Kate C. Todd, & Lisa S. Blat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 Carolyn A. Pearce for Chamber of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ugh F. Young, Jr., of Virginia, & David R. Geiger & Creighton Page for Product Liability Advisory Council, Inc.

Richard A. Samp, of the District of Columbia, & Donald R. Potts, Jr., for Washington Legal Foundation.

Ellen Vargas, of the District of Columbia, & Lisa G. Arrowood & Katherine A.K. Munna for American Legacy Foundation & others.

Michael B. Elkante for Tobacco Control Legal Consortium.

Steven J. Phillips & Victoria Phillips, of New York, &

Evans v. Lorillard Tobacco Co. 판결문 2012. 12. 3 / 미국 메사추세츠

- 중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니코틴 수준 함유 제품으로 멘톨이 포함되지 않은 궤련을 합리적 대체설계로 인정
→ 설계상 결함 인정

※ 중독을 유발하는 니코틴 수준 : 개비당 0.4mg 내지 0.5mg

니코틴 저감 담배라 해서
담배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

중독성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니코틴 ▼

중독성 이외의 약리 작용은 가능하도록 니코틴 유지



흡연자가
자유 의지로 흡연의 중단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짐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 지시 ·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표시에 대한 의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위험성을 숨기거나 **속이는 행위 하지 않을 것**

경고 문구의 모호성

1976~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2005~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경고 문구의 **흡결**

2008년 중독성 경고문구

2008~2011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광고 등을 통한 경고문구 무효화

‘깔끔한’

‘자신있는 부드러움’

‘마일드’

‘sky blue’

‘라이트’

‘zero’

‘상쾌한’

‘저타르’

‘순(順)’

‘연한’

‘99% 냄새없음’

‘one’

피고들 주장 ⇒ 1심 판결

사회 전반에
이미 인식되었던
위험이기에,

제조사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제할 수 없음

언론 등을 통해
위험성은 계속
논쟁의 대상이었다.
제조사의 방관 또는 방해

제조사는 위험성을
계속 부인해 왔다.
제조사의 진실 왜곡

※ 1964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기사들이 급증하여, 일반인들이 담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주장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인식되지) 않았다.

1964년 담배 유해성에 대한 미국 보건총감보고서 발표 이후
상반된 국내보도 자료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경향, 1964. 1. 13. **갑 제256-1호증**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우와 다르다...적은 비용으로
정신 위생에 좋은 담배를 굳이 끊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경향, 1964. 1. 14 **갑 제256-2호증**

니코틴은 약리학적으로 중독성 있는 물질이 아니며
흡연은 독이 아닌 것에 대한 자기도취일 뿐이다.

경향, 1985. 4. 30 **갑 제256-7호증**



제조사는 위험성을 계속 부인해 왔다.

흡연과 건강 및 제품 관련 문제 관련
소비자 전화 상담 서비스

흡연이슈부서 답변, BAT questions on smoking and health and product issues for operators of consumer helplines
갑 제263호증

SMOKING AND HEALTH

Dear ---,

Thank you

In response to your question about the health effects of smoking, we have reviewed the latest scientific research and found that smoking is a leading cause of lung disease, heart disease, and other health problems.

Yours sincerely,

A. 당사(BAT)는 너무 많은 과학적 질문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증진법안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
1994, 한국담배협회
갑 제286호증

해당 조항:
한 광고 및
찬성/반대

흡연이 사람의 건강에 **해롭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고** 그러한 제한이 흡연할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 또한
관련 판매로 인한 수익은 국가의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사유: - 흡연을 하기나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개인이 결정할 문제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자유롭고 근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금연 단체를 지원할 수 없다. 이는 이것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제조사는 위험성을 계속 부인

갑 제283호증의2

선행 담배소송 KT&G 서면

2004. 1. 10.자 준비서면 10쪽

어느 정도나 미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담배가 500년을 넘게 인류의 대다수에 의하여 애용되어 왔고,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담배의 제조나 판매가 금지된 사실은 없으며, 절대 대다수의 흡연가들이 평생 담배를 피워도 아무 이상 없이 수명을 다하고 살아 온 점은 역사적 사실로서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에 **심지어 천연물질에도 포함되어 있는 발암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 때문에 담배가 유해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 일반의 인식을 넘어선 특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제조업자

미국 RICO 판결 중 일부

갑 제7호증의2 번역본

509. 궐련의 흡연은 질병, 고통, 사망의 원인이 된다. 피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이나 흡연의 위험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왜곡하고 축소하여 왔다. 흡연과 질병의 관계에 관한 과학계 및 의료계의 지식과 이해는 1950년대 내내 진화하여 1964년 의견 일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1964년 이후에도, 피고들은 이러한 의견 일치와 의견 일치가 기반한 압도적인 증거들 모두를 지속적으로 부인하여 왔다.

829. 1950년대부터, 피고들은 과학계보다 수십년 앞서서 니코틴이 중독성 있는 약물이라는 점, 궐련 제조자들은 약물 산업(마약 산업, drug business)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궐련은 약물(마약, drug) 전달 장치라는 점에 대한 연구를 하여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라이트, 저타르 담배의 소비자 기망

실제 흡연시
**더 깊게
더 자주
빨아들임**
‘보상흡연’

일반담배와
**유해성
차이 없음**

사진출처
연합뉴스 2018.11.21.

→ “피고들은, 사람들이 흡연을 계속하여 그들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저타르/라이트
궐련을 일반(Full-Flavor) 궐련보다 해가 덜한 것으로 거짓으로 홍보하고 판촉하였다.”

<미국 RICO 사건 판결> (갑7)

라이트, 저타르 담배의 소비자 기망

저니코틴, 저타르 제품들이
흡연시 표기된 수치보다 훨씬 많은 양의 타르와 니코틴에 노출

보상흡연으로 인해
위험성이 줄지 않음을 알면서도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음

필터의 구멍, 기계측정의
한계를 악용한 수치를 기반으로

라이트, 마일드, 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

라이트, 저타르 담배의 소비자 기망

선행 사건
판시
서울고등
2007나18883
(11. 2. 15. 선고)

당시 피고(KT&G)들이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를
개발하여 시판할 때까지도 흡연자의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이트, 저타르 담배의 소비자 기망

갑 제211호증

개별적으로 가열 밀봉된 궐련

1985, David Creighton, BAT

(14면) “보상 흡연이 가능한 필터”

전략적인 목표

흡연자가 그들이 담배에 대해 요구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이것은 사실상 필터가 보상흡연이 가능하고 타르 비율에 비해 좋은 맛을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점

이러한 것이 윤리적인 일인가?

갑 제315호증

제10차 ARTIST 회의 요약

2001, 필립모리스사, KT&G 등 참석

(3면) “라이트 담배...”

로퍼 박사의 결론:

“울트라 라이트” 궐련으로 전환할 때 보상흡연: 궐련 당 평균 니코틴 흡입량은 “울트라 라이트” 궐련의 경우 ISO 산출량의 약 2배라 보고됨

공모 · 협력 - '과학적 진실에 반하여 부당한 입법 방해'

한국담배협회

-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K, JTI 등 담배회사들을 구성원으로 업계 공통의 이익 수호를 위해 만든 조직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입법, 규제 방해활동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대해 피고들 포함 5개사 연명으로 반대 의견서 제출 (1994, 갑286)

“흡연이 사람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국가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교육·홍보하고 금연단체를 지원하는 조항은 기본권 침해”

공모 · 협력 - '과학적 진실에 반하여 부당한 입법 방해'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운영비, 활동비 지원

- 한국담배협회 : 2000.~2012.까지 사업준비금 등 명목으로 60억 원 이상 지원
- KT&G : 한국담배협회와 별도로 17억 원 특별 지원
 - * 한국담배소비자협회 대의원에 KT&G의 임직원 배치(40명 중 20명)
-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피고들이 지원한 자금을 바탕으로 **건강증진 입법 반대 활동**

담배 이익집단 활용 국민건강증진법 제·개정 방해 운동

- “우리는(PM) **KT&G를 포함 담배산업을 이끌어** 담배농가연맹, 담배 소매인협회, 흡연자 권리협회와 함께 **연합을 만들었다**”
- 대규모 반대 집회, 여론조사, 대중 서명운동, 기자회견, 신문광고, 성명서 제출

(필립모리스, 1996) (갑300)

범국민 지지서명 150만명 참여

2025년 항소심 종결을 앞두고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
150만명 참여라는 놀라운 성과

h-well 국민건강보험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범국민 지지서명

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



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 담배소송이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담배회사(재킷&g, (주)한국필립모리스, (주)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 서명운동 참여 방법

온라인

QR코드 스캔 또는
전송된 링크로
작성 제출



지지서명 받아가기



감사합니다

